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 문서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수신방법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월 150만원 이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 유지기간
	①			
	②			

※ 급여 선택	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발생일)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같음할 수 있습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혼인 유지기간"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적으십시오.
6.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7.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8.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